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통합하면서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6명, 7급 6명)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통일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13.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북한인권기록센터”로 한다.

제7장의4(제32조의7부터 제32조의9까지)를 삭제한다.

제32조의10 중 “지도 및 지원”을 “지도·지원에 관한 사무, 통일체험 연수,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7명을”을 “6명을”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84”를 각각 “169”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80”을 “165”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 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관계관 리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 무소, <u>북한인권기록센터</u> 및 <u>한 반도통일미래센터</u> 를 둔다.	제2조(소속기관) ①----- ----- ----- ----- --- <u>북한인권기록센터</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장의4 <u>한반도통일미래센터</u>	<삭 제>
제32조의7(직무) <u>한반도통일미래 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한반도 통일미래를 위 하여 남북 간 청소년 교류 및 통일체험 연수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u>	<삭 제>
1. <u>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u>	
2. <u>남북 간 청소년 교류 관련 사 업의 추진</u>	
3. <u>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의 개 발 및 운영</u>	
4. <u>세대·계층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u>	
5. <u>센터에서의 남북 인적 교류 등 행사 지원</u>	

6. 센터 이용 수요조사 및 국내외 홍보

제32조의8(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의9(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0(직무) 국립통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삭 제>

<삭 제>

제32조의10(직무) -----

통일교육에 대한 <u>지도 및 지원</u>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7명</u>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u>지도·지원에</u> <u>관한 사무, 통일체험 연수, 남북</u> <u>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등</u>----.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6명</u>----- ----- ----- ----- -----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총 계	<u>184</u>	<u>169</u>	-15
일반직 계	<u>184</u>	<u>169</u>	-15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0</u>	<u>165</u>	-15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7